

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전문개정 1992년 11월 6일 조례 제 302호
개정 1994년 3월 12일 조례 제 340호
개정 1994년 11월 22일 조례 제 366호
개정 2000년 12월 23일 조례 제 635호
개정 2001년 2월 19일 조례 제 649호
개정 2003년 12월 29일 조례 제 769호
개정 2005년 3월 15일 조례 제 815호
일부개정 2011년 2월 21일 조례 제1137호
(제명개정 포함)
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8호
(지방공무원 정원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2. 21>

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3. 11. 25>

1.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: 별표 1의 지급구분표
 2.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: 별표 2의 지급구분표
- [전문개정 2011. 2. 21]

제3조 삭제 <2003. 12. 29>

제4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·하수처리장·쓰레기처리장 등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. <신설 94. 3. 12, 개정 2000. 12. 23, 2011. 2. 21>

제5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[본조신설 2011. 2. 21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4. 3. 12 조례 제34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1994. 11. 22 조례 제366호>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0. 12. 23 조례 제63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1. 2. 19 조례 제649호>

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2. 29 조례 제769호>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3. 15 조례 제81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2. 21 조례 제113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11. 25 조례 제1328호, 지방공무원 정원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전임계약직 공무원”을 “일반임기제 공무원”으로 하고, 별표 2의 제목 중 “전임계약직”을 “일반임기제”로 한다.

② 생략

[별표 1] <개정 2003. 12. 29>

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
(제2조제1호 관련)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갑 지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고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* 급지의 구분

- 갑지 : 특별시, 광역시, 도 및 시·구

[별표 2] <개정 2013. 11. 25>

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
(제2조제2호 관련)

근무연수별 등 급 별	가	나
	급	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 이하	월 973,000원 이하
4년 이상	월 1,306,000원 이하	월 967,000원 이하
3년 이상	월 1,300,000원 이하	월 961,000원 이하
2년 이상	월 1,295,000원 이하	월 956,000원 이하
2년 미만	월 1,289,000원 이하	월 950,000원 이하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

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있다.

[별표 3] 삭제 <2003. 12. 29>

[별표 4] <개정 2005. 3. 15>

장려수당지급구분표(제4조 관련)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위생처리장·하수처리장·쓰레기처리장 등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(현장 근무자에 한함)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	월 220,000원